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법 안 설 명 회

“반복되는 죽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 일시 : 2020년 7월 2일 (목) 14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NO MORE DEATH



# “반복되는 죽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이전의 법률안과 무엇이 다른가?’

‘처벌보다는 예방이 필요한 것 아닌가?’

‘영국의 기업살인법 효과는 과장?’

‘산안법을 강화하면 되는 것 아닌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법안 설명회

일시/장소 : 7월 2일(목) 오후 2시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사회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 피해자와 동료가 말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0분]
- ✓ 법안설명 [20분] 운동본부법률팀장 손익찬 변호사
-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0분] 운동본부 최명선 상황실장
- ✓ 질의응답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운동본부 홈페이지 <http://nomoredeath.kctu.org/>  
운동본부 이메일 [nomoredeath2020@gmail.com](mailto:nomoredeath2020@gmail.com)  
문의 02-2670-9136, 02-469-3976



사회 : 김혜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1부 : 피해자와 동료가 말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07

-발언1 “힘없는 하급관리자가 아니라 권한 있는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박철희 | 2017년 노동자의 날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발언2 “하청업체 동료가 아니라 원청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최성균 | 발전비정규직 동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장

-발언3 “기업에 엄격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임선재 | 서울교통공사노조 PSD지회장

-발언4 “숨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강하게 처벌합니다.”

김도현 |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의 누나

-발언5 “행정책임자 공무원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습니다.”

허경주 |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가족

-발언6 “시민들의 죽음에도 책임을 묻습니다.”

유경근 |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예은이 아빠

-발언7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합니다”

조순미 |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

2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알아보기

15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법안과 설명

손익찬 | 변호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법률팀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요 문답

최명선 | 민주노총 노안실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상황실장

질의응답



## “힘없는 하급관리자가 아니라 실제 권한이 있는 기업의 최고책임자를 처벌합니다”

박철희

| 2017년 노동자의 날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동생이 떠난 그 날이 노동절이었습니다.

남들은 쉬기도 했지만, 동생과 저는 늘 잔업이나 휴일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식구들 먹여 살린다고, 사고 전까지 며칠 이상 놀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고를 당한 거 같습니다.

휴일에도 힘든 일을 마다 않고 일터로 나가는 이유는 가족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가장 존중받아야 할 그 날이 저희에게 가장 불행한 날이 되었습니다. 안전하지 못한 작업환경은 동생을 비롯한 6명 노동자의 삶을 영영 빼앗아 갔습니다.

동생은 제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제일 친한 친구였습니다.

동생이 골든 타임을 놓치고 치료 한 번 제대로 못 받고 떠났다는 게 서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까지도 사고 트라우마는 제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지만, 1심 재판부는 별 권한이 없는 노동자와 현장 반장만 처벌했습니다.

그나마 항소심을 통해 조선소 소장과 하청업체 대표가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삼성중공업 대표는 아예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게 만들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급관리자가 아니라 권한이 있는 기업의 최고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법이 지켜주는 그런 안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 “하청업체 동료가 아니라 원청책임자를 처벌합니다.”

최성균

| 발전비정규직 동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장

## “김용균은 작업 지시를 너무나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죽었다.”

김용균 사망사고 특조위 결과가 발표되던 날, 강조된 말입니다.

처음부터 김용균의 죽음을 개인의 부주의 때문으로 몰아갔던 회사의 대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조위의 권고는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로 김용균이 떠난 지 571일째이지만

책정된 임금 절반을 하청업체가 착복하는 문제도,

외주화된 위험업무를 정규직화하는 문제도 진전이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입니다.

무엇보다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김용균을 죽게 만든 사람 그 누구도 아직 처벌받지 않았고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용균이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8년간 열 두 번 있었던 산재사고에서 배웠다면,

스물 여덟 번의 안전을 위한 시정요구가 무시되지 않았다면,

용균이는 지금도 저희와 함께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용균이의 죽음을 막을 수 있던 사람들은 사고 전에도 사고 후에도 너무나 안전합니다.

실제 권한이 있는 원청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가 죽으면 당신도 원청책임자도 처벌된다는 교훈을 주어야 합니다.

하청업체 동료가 아니라 원청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합니다.



## “기업에 엄격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임선재

| 서울교통공사노조 PSD지회장

구의역 김 군의 죽음 이전에 똑같은 두 번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2013년 성수역, 2015년 강남역 사고.

두 번의 죽음에도 바뀌지 않았던 현장에서 김 군은 이전의 죽음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지켜지지 않았던 2인 1조 작업, 열차운행 중에 이루어진 위험한 선로작업,

고장접수 후 1시간 안에 출동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패널티,

반복된 죽음에도 변하지 않았던 이런 부당한 현실이 김 군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죽음이 반복되어도 원인을 고치지 않는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죽음을 방치한 채 돈을 벌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이윤이 없다는 교훈을 주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 위험을 방치한 기업에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숨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강하게 처벌합니다.”

김도현 |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의 누나

제 동생 태규는 지난해 4월 건설현장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추락사입니다.  
문이 열린 채 운행된 엘리베이터, 신호수 없이 운행한 지게차,  
안전교육도 안전장비도 없는 현장, 추락방지 시설도 없는 곳...  
태규의 죽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곳에선 누구라도 똑같이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태규 죽음에 책임을 묻는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현장소장과 차장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에 벌금 700만원, 시공사 대표와 발주처는 아예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태규 사건은 그래도 실형이 내려졌지만, 중대재해 사건의 실형 비율이 3%가 안 된다니,  
정말 기업들이 법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일 한 명씩 떨어져죽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 데에는 법의 책임이 큼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서 숨방망이 처벌을 바로잡고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다시는 태규와 같은 죽음이 없도록 꼭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 “행정책임자 공무원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습니다.”

허경주

|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가족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갑작스럽게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스텔라데이지호는 세월호처럼 일본에서 폐선하려던 선박을 싼값에 사서 중국에서 개조한 선박입니다. 낡은 개조선이다 보니 당연히 구조변경 및 설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안전검사는 제대로 꼼꼼히 시행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사가 유지보수를 제대로 했는지 감독해야 하는 해양수산부는 “민간의 일은 민간이 알아서 하라”며 국가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안전을 관리 감독할 최종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한국선급’에 검사 권한을 위탁했다면서 발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사이, 폴라리스쉬핑 소속의 개조노후 화물선들은 연일 침수, 화재, 침몰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텔라유니콘호, 스텔라퀸호, 솔라엠버호, 스텔라삼바호, 스텔라베너호까지... 이런 선박이 여전히 국내에만 이십여 척 남아있고, 오늘도 천여 명의 선원들이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있습니다.

제2의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하는 것을 막으려면 국가가 제대로 선박안전을 관리감독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민간에 선박 안전관리를 위탁했다고 해서 행정책임자 공무원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런 참사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시민들의 죽음에도 책임을 묻습니다”

유경근

|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예은이 아빠

예은아빠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든 아니든 모든 재난 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가족이 희생되고 남은 가족들은 피해자·유가족으로  
평생을 살아내야만 한다는 점에서 같은 비극입니다.

또한, 대부분 사회적 재난 참사에는 기업과 정부의 잘못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책임자를 가려내 엄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지지합니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원인 규명과 책임자처벌에 참여해야 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합니다.”

조순미

|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

6,799명 그 가운데 1,552명.

지난 달까지 정부에 가슴기살균제 피해자로 접수한 분들,  
그 가운데 세상을 떠난 분들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매주 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에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생활화학 참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윤만을 목적으로 사람들 안위를 아무 생각없이 내던지는 기업들을 막으려니  
우리의 힘은 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 문턱은 너무나 높습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들의 목숨과 건강을 빼앗은 기업들이 던져주는 돈 몇 푼,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돈에 눈 먼 기업들이 처벌 받는 게 더 두렵고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우리 목숨과 건강을 지키도록 만들고 싶어합니다.

소비자들, 노동자들의 목숨이, 건강이, 안전이  
기업들 탐욕 앞에 더는 위협받지 않게 해주세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높은 수위의 징벌적 배상 도입으로  
부디 안타까운 죽음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대하는 기업들, 정당들과 정치인들이 있다면  
더 많은 죽음을 바라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비록 거친 숨이지만, 온 마음으로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NO  
MORE  
DEATH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법안과 설명

손익찬

| 변호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법률팀장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결과를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다.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
  -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장



- 라. 그 밖에 공중을 상대로 교육·강연·공연 등이 행하여지는 장소
3. “공중교통수단”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라.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의 선박
-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항의 항공기
4.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나. 임대, 용역,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6.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발주”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는 “건설공사발주자”가 하는 발주

나. 조선사업의 경우,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선박”(고정식 해양플랜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건조, 개조, 정비, 변경 등에 관하여, 가목의 “건설공사 발주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있는 자가 하는 발주

8. “경영책임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

**제3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①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한다. 이하 같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거나 발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해

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위험방지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제51조, 제58조제1항, 제59조 제1항, 제60조, 제63조, 제64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65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제2항, 제8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③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제4조(도급 및 위탁관계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의 귀속)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공동으로 제3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②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설비 등이 위탁되어 수탁자가 그 운영·관리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는 수탁자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공동으로 제3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5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이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제1항의 행위로 사망을 제외한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2명 이상에 대하여 사망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長期) 또는 다액(多額)을 합산하여 가중한다.

**제6조(법인의 처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 및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이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
2. 법인이 소유·운영·관리 또는 발주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

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그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자, 종사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때

3.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자, 종사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때

② 법인을 제1항에 따라 처벌할 때 법인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1.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2. 법인 내부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1. 영업허가의 취소

2. 5년 이내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3. 5년 이하의 이행관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입찰자격 제한

④ 법원이 제3항 제3호의 이행관찰을 병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제3항 제1, 2, 4호 중 어느 하나의 제재를 가할 것을 판결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 회복
2. 관련 종사자의 정기적인 교육
3.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개선조치
4. 공익적 급부제공
5. 공무원의 정기적인 시설점검 및 현장감독
6. 개선사항의 공개

**제7조(인과관계의 추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에서 정한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1. 당해 사고 이전 5년간 사업주,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가 정하고 있는 의무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 또는 관련 행정청에 의해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2.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당해 사고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현장을 훼손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 진상조사, 수사 등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방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8조(공무원의 처벌)** 공무원(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권한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야기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의 감독
2.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관련된 감독·인허가

**제9조(양형절차에 관한 특례)** ①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의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1조에도 불구하고 판결로써 유죄를 선고한 뒤 따로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양형심리를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전문가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하거나 피해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전문가위원회의 구성은 「형사소송법」의 양형절차에

관한 특례에 따른다. 다만 국민양형위원회 당해 사건의 피해자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④ 재판장은 형의 선고 시 제2항에 따라 확인된 심사결과, 피해자 등의 의견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전문가위원회 심사 결과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소송기록에 편철한다.

**제10조(허가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1조(처벌사실 등의 공표)**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처벌의 결과 및 제10조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자 또는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중대 재해를 야기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가해자의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수준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가해자의 재산상태
7. 가해자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일어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사업주, 법인, 기관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요 내용과 수정 보완 조항

## 1. 주요 내용

### 1) 기업의 최고책임자, 원청 책임자를 처벌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포괄적인 위험방지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이것의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지도록 함
- 또한,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금지,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작업중지, 공기단축, 위험공법 사용, 일터 괴롭힘 등 사상이 다발하는 구체적인 법 조문을 명시하여 반드시 포괄되도록 함
- 형식적인 책임자가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는 법망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경영책임자’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 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책임주체가 책임을 지도록 함
- 위험의 외주화가 다단계로 이루어지는 도급, 위탁의 경우에도 그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인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함
- 사업주, 법인,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등을 하거나 법령에 따라 시설, 설비 등을 위탁한 경우에도 공동으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 2)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다단계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에 적용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여전히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다단계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도 원청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은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피해 적용대상 노동자를 특수고용, 다단계 하청을 비롯한 종사자 전체로 확대

### 3) 노동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죽음에도 동일하게 적용

- 규율의 대상으로 사업장만이 아니라 공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수단도 포함하고, 적용대상으로 중

사자만이 아니라, 이용자 등으로 확장하였음

-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시민참사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제조물에 대한 위험방지의무도 확대 부여한다. 기업의 위험방지의무 위반으로 노동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죽고 있으며 안전관리 체계의 부실은 시민들의 죽음으로도 이어지고 있음. 특히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 불산 누출사고, 대구지하철 참사 등을 거치면서 이런 사회적 참사에서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

#### 4) 기업 자체를 처벌

- ‘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이 중요함. 한국 사회에서는 기업의 범죄능력은 인정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기타 법률에서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되고 있음

-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위험이 생길 경우 그 위험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특정한 개인이 아님. 대부분은 기업의 경영원칙과 각종 제도 및 조직문화로 형성된 규칙이나 관행 등이 작동되기 때문임. 이에 관리감독 부실이라는 점을 넘어 기업의 정책, 행동규칙, 관행으로 비롯된 위험으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하여 재발방지로 이어져야 함

- 한국의 법체계상 법인을 독립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법인 내부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해 기업 자체의 책임을 묻는 조항을 담고자 함

- 제출된 법안은 개인 처벌과 연계된 기업의 처벌이지만, 기업을 독립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5) 행정책임자 공무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다

- 1999년 씨랜드 화재참사는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및 강사 4명이 숨진 사고였음. 인허가가 나서는 안 되는 곳을 공무원이 인허가를 해줌으로써 사고가 커졌다는 것이 밝혀졌음. 춘천으로 봉사활동을 갔던 인하대 봉사단도 산사태로 사망에 이르렀지만 결국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에 펜션 허가를 내준 공무원의 잘못을 제대로 묻지 못함

-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다면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도 많음. 하지만 공무원들은 관리감독을 해태함으로써 위험을 방조하기도 하며 그것이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음

- 인허가나 관리 감독은 정부 및 지자체 업무로 되어 있음. 불법적인 인허가나 관리감독업무의 소홀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장을 포함한 공무원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도록 함

## 6) 징벌적 손해배상 등

- 형사처벌 만으로 예방효과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기업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경우 기업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써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제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법원이 직접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기관은 아니므로, 법원 판결에 행정절차를 포함하여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함. 또한,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처벌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 문제를 사회적으로 드러냄

-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함. 엄중한 손해배상 책임이 예방에서도 핵심이기 때문임. 배상액 산정에는 고의나 손해발생 우려에 대한 인식정도,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위반행위 기간과 횟수, 가해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함.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이 별도의 법률로도 제정될 수 있기를 바램

## 2. 20대 국회 제출 법안에서 수정 보완한 주요 내용

### 1) 발주처에게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도록 보완

-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를 비롯하여 건설현장, 조선업의 중대재해 다발의 핵심원인은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혼재작업임

- 발주처의 무리한 요구를 근절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혼재작업 금지만 규정해도, 사실상 아무런 실효성이 없음

- 2020년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 발주처에게 안전보건의 의무를 신설부과하고 있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었던 공기단축, 위험공법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발주처에게도 적용하고 있음.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에 대한 대책으로 국토부에서도 <적정공기 산정 의무화> 추진을 제기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재사망 처벌조항은 공기단축 위험공법 사용 등에 대한 발주처와 원청의 법 위반을 산재사망과 연동시키지 않아, 당사자 처벌이나 조직적, 구조적 책임을 묻기 어려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이하 운동본부) 제출 법안에서는 발주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건설업, 조선업에 적용하여, 공기단축, 위험공법 사용 등에 대한 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 2) 일정한 조건에서는 기업의 입증책임을 전환함

- 구조적으로 책임분산을 하는 구조에서 기업 최고책임자와 기업법인의 처벌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입증책임>의 문제임

- 여수 대림 산단 폭발사고,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울산 황산 누출사고, 충북 지게차 산재은폐 등 기업은 매번 사고에서 작업허가서를 조작하고, 사고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해옴. 그러나, 기업의 이러한 사고조작, 산재은폐 시도가 조사결과에서 밝혀져도 기업 처벌로는 이어지지 않았음

- 한국에서 동일기업이 동일유형의 반복사고가 발생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개별 사고별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입증책임 문제로 구조적인 원인에 따르는 기업 최고책임자 처벌이 연동되지 않음

- 이에 운동본부 법안에서는 반복적 법 위반, 조사 방해 등의 경우로 한정하여 기업의 유해위험 방지 의무 위반행위와 중대재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규정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처벌법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높이도록 보완하였음

## 3) 중대재해 정의 신설

-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므로, 중대재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포괄하여 적용하는 법이므로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

자가 발생한 경우'로 하여 피해정도의 수준을 명시함.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명시하여 사고성 재해만이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 이용 중 재해, 화학물질로 인한 질병,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죽음 등을 포괄함

-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의 양적기준이 사고성 재해를 바탕으로 제정된 지 오랜시간이 경과했음.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아 기준을 변경함

#### 4) 양형절차에 관한 특례

-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양형에 있어서 적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제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양형절차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함

- 판결과정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범죄적 인식>의 문제가 있으므로, 유죄 무죄선고는 법원에서 하되,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형량에 대한 것은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를 두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회에는 피해자 추천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 5) '이행관찰' 신설

- 법인의 처벌에서 이행관찰을 신설하여 병과할 수 있도록 함.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과 유사한 취지임

- 법 제정 취지가 <재발방지>에 있으므로, 처벌 이후에 개선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조치를 병과할수 있도록 함

- 이행관찰의 내용은 <피해자의 피해회복, 관련 종사자의 정기적인 교육, 재발방지 및 예방점검 및 개선조치, 공익적 급부 제공, 공무원의 정기적인 감독, 개선사항의 공개> 등임

#### 6) 공무원 책임자 처벌

- 대구지하철,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등에서 공무원과 공무원 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2015년 법안에서는 공무원 책임자 처벌이 있었으나, 21대 국회 발

의 법안에서 누락됨. 이에 책임자 처벌을 규정함

- 운동본부 법안에서는 공무원 책임자에게 관리 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공무원과 정부책임자가 위험방지의무를 동일하게 지고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7) 기타 조항 개정

- 사업장을 사업과 사업장으로 수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장에서 사업으로 개정한 취지를 반영
- 일부 규정에서 종업원을 종사자로 개정하여 대상범위 확대의 의미를 명확히 정리
- 도급 및 위탁관계에서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귀속 조항에 <기관>을 추가하여 선박사고에서 안전감독 업무를 위탁하여 책임과 처벌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함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요 문답

최명선

| 민주노총 노안실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상황실장

## 1. 한국 산재사망의 특징

○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을 향해서만 ‘기업은 허리 굽혀 사죄하고, 경찰과 노동부는 구속과 기소를 밝히고, 정부는 수십 페이지 대책을 발표하고, 정치권은 입법을 약속하는’ 짜여진 일정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음

-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면 대책은 실종되고, 기업은 불기소와 무혐의로 풀려나고, 법안은 쓰레기통에 처박혔음. 그리고 일터는 여전히 불법 천지로 노동자는 죽어나가는 현실이 반복되었음. 기업 처벌 강화가 없는 각종 개선대책은 유명대책으로 전락하게 됨

-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 유족들도, 기존의 수많은 노동자, 시민 재해의 유족과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음. 90% 이상의 현장에서 법이 위반되는 현실임. 기업의 최고책임자가 최소한의 법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이나 인력에 대한 안전투자는커녕 공기단축과 비용절감만 요구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뒤집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한 해결방안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임

### ○ 한국 산재사망의 특성

#### 재래형, 반복형 사망이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집중

- 추락, 끼임 등 재래형 사고 비중이 높음. 기술적 원인보다 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

- 반복형 사고 비중이 높음. 맨홀 공사, 밀폐 공간 작업, 선로보수 작업 등

- 동일 사업장의 반복적 사고 사망이 다발 : 현대중공업 2,501명 사망. 매월 0.8명 사망, 당진 현대제철 2015년 1년 반 동안 17명 사망. (주) 한화 대전공장 9개월 동안 8명 사망. 매년 산재사망 다발 기업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 건설, 대림 등 동일 건설사에서 발생

- 매년 과로사 산재사망이 370명이고, 2018년 노동부 통계 뇌심질환은 457명임. 산재사망 원인 비율로도 높고, 장시간 노동의 문제가 사고성 재해 다발의 주요원인 이기도 함
-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비율이 높음.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은 45%를 상회하고 있음. 하청 노동자 사망비중이 90% 가까이 되는 건설업을 포함하면 산재사망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은 절대적으로 높음 (노동부는 공식 하청 산재통계가 없음)
-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 <중대재해 사망원인의 비중변화>에 따르면 2010년 이후에는 기술적 원인과 교육적 원인 보다 작업관리상의 원인이 높은 비중으로 조사됨
- OECD 국가의 산재사망에서 상위 순위는 저 개발 국가임. 한국은 세계 11위 경제규모,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노동 분야, 특히 산재사망 분야에서 최하위를 유지하는 비정상적 구조임

○ **반복적, 재래형 산재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들**

- 위험의 외주화 : 원 하청 수탈구조 속에서 간접고용의 확산
- 90%이상 사업장의 법 위반
- 감독관 인력 부족, 형식적 감독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산재사망 처벌 형해화
- 작업중지 명령 및 노동자 작업중지권 형해화
- 노동자 참여권 보장 형해화
- 고정 사업장, 제조업, 건설업 중심 법 제도
- 안전교육 및 노동자 알권리 보장 형해화
-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형해화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은 가장 핵심적인 재발방지 대책**

- 사업장 법 위반 비율 90%, 산재사망 처벌이 하급 · 말단관리자에 대한 처벌, 400만원 벌금 수준인 한국에서 법 제도 개선은 무용지물
- 산업재해는 기업의 안전투자, 안전인력, 안전시스템, 고용구조 및 노동시간 구조적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말단관리자, 노동자 처벌로 재발방지대책 수립으로 연계되지 않음
- 법 위반 처벌이 낮아, 기업의 법 준수 유인요인이 미미하고, 법을 준수하려는 기업이 백안시되거나 기업 간 경쟁력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악순환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와 재난참사에 대해 기업이 구조적, 조직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안전투자를 하도록 하는 기본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 2.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 분석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714건 산업재해 판결 분석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연구, 노동부)

○ 기소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의 83% 불구속 상태에서 약식명령(구 약식) 청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발생건수 2007년 1,752건 → 2017년 6,439건, 약 3.5배 증가

- 2017년 처리된 총 13,187건 중 구속된 건수는 1건(0.007%). 공소 제기된 사건도 정식 기소된 경우는 613건(4.64%) 약식명령 청구 건수는 10,934건(82.91%)이었음

○ 산업안전보건범죄 재범률 97%. 일반 형법 범죄 43%의 2배

- 97%에 달하는 재범률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의 전과 현황

- 2017년 초범이 482명, 1범이 471명, 2범이 300명, 3범이 246명 등 아주 많은 비율로 반복된 범행이 저질러지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 범죄 재범비율 약 97%, 일반 형법 범죄는 재범률이 43%로 2배이상 더 많음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들은 대부분 전과 1범부터 3범까지 차지. 2017년은 전과 4범 153명, 전과 5범 96명, 전과 9범 이상도 105명

- 산업재해가 반복적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뿐 아니라, 동일기업에서 반복 발생되고 있음이 증명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전 처리 통계 (자연인)

구분	징역	금고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무죄	연소	공소기각	계
건수	64	22	981	1,679	50	130	4	2	2,932
비율	2.18	0.75	33.46	57.26	1.71	4.43	0.14	0.07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처리 통계 (법인)

구분	벌금	선고유예	무죄	연소	공소기각	계
건수	1,193	33	110	1	2	1,339
비율	89.1	2.46	8.22	0.07	0.15	100.0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 직책 - 말단관리자 노동자만 처벌

순위	직책	명수
1위	운전기사	98명
2위	근로자	82명
3위	사원	50명
4위	안전담당자	42명
5위	하수급 책임자	24명

###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질문들

#### 1) 처벌강화 보다 예방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예방에 대한 제도개선, 감독강화 등은 주요한 과제임. 그러나, 십 수년 동안 진행된 법 제도개선, 320여명 수준에서 550명 수준으로 증원한 감독인력에도 불구하고, 산재사망이 감소되지 않는 원인 고찰이 필요함
- 사업주들은 90% 이상이 법을 위반함. 수십, 수 백개의 법 제도개선은 실질적인 산재사망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무용지물이 되어 왔음
- 재벌 대기업 또한 수많은 중대재해에서 수 천건의 범위반이 적발되었고,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투자 비용은 전체 사업장 평균보다 낮음
-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작업중지 제도 개혁, 노동자 참여제도 개선 등 산재예방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은 산안법 개정으로 추진할 과제이나 제도개선이 되어도 처벌과 연동되지 않아 현장에서 무력화 되는 현실 개선은 불가능

- 모든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불가능하고, 감독이 되더라도 과태료 수준의 처벌, 사망사고에도 400만원 내외 벌금 수준으로는 기업의 법 준수를 유인할 수 없음
- 십 수년 동안 개정을 거듭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는 사업장이 오히려 기업경쟁력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이 법을 준수하는 풍토로 획기적 개선이 되어야 법 제도 개선이나 감독 강화 등에 대한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음

## 2) 중소영세 사업장 처벌로만 귀결되고, 영국의 기업살인법도 효과가 없었다?

- 중소영세 사업장 산재사망의 대부분은 하청업체이며 건설업, 조선업, 제철, 발전 등 재벌 대기업의 하청 산재사망임. 산재사망의 절반을 넘는 하청 산재사망에서 원청의 말단관리자나 하청 사업주 처벌이 아니라 원청 대기업의 최고책임자와 기업법인이 처벌받도록 하는 것임
- 영국은 기업살인법 제정 이후 산재사망 만인률이 대폭 감소하였고, 이후에는 사망 만인률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추세임. 영국은 사고사망 자체가 한국보다 11배나 적고, 국제적으로 사망 만인률이 가장 낮은 국가임. 사고사망보다 직업성 질병, 정신건강 등으로 산재요인이 이미 이동하였음
- 영국은 원·하청 구조가 한국처럼 수탈적인 구조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르는 처벌도 매우 강력함. 영국의 기업살인법은 한국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사회적 맥락이 다름. 영국은 법체계상 기존 산안법 및 형법으로 처벌하기 힘든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임. 다시 말해 자연인 중 그 누구도 처벌하기 힘들지만 명백히 기업 내에 ‘경영실패’가 존재하므로 개인의 책임과 상관없이 법인의 책임을 독자적으로 물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속에서 탄생한 법임.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산재사망은 다른 법으로 처벌을 받고 제한된 경우에 한해 기업살인법을 적용하므로 그 사례가 적을 수밖에 없음. 영국이 처벌 사례가 적다거나 중소기업이 적용을 받는 문제는 영국의 원·하청 구조, 산업안전보건법과 기업살인법 2개의 법을 적용하는 사법 시스템의 문제이지 법 자체의 문제는 아님. 자본가 단체와 보수 전문가들이 영국의 기업살인법 적용 사례를 단순화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효과를 악의적으로 호도하고 있음
- 한국의 원·하청 구조와 집중되는 하청 산재사망, 산업안전보건법에 원청 책임 부여 법제화는 되었으나 원청 기업의 최고책임자와 기업법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 등을 해결하여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대기업의 재발방지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임

### 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는 불가능한가?

#### (1)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관계

-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형법상 업무과실치사죄 적용여부를 밝히는 경찰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를 밝히는 노동부 수사 진행
- 하나의 산재사망사고에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기소되어 법원에서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결이 진행됨
- 시민재해도 관련법(시설물 안전관리 등 분야별 안전관련 법)과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한 수사와 적용이 진행됨

#### (2) 현행 산안법과 형법 적용 처벌 규정의 한계

##### ① 안전조치, 보건조치,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따른 사망사고로 한정

-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명시적 규정되지 않은 사망사고 처벌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여부로 검토하게 됨
- 산안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양벌규정으로 사업주 처벌이 제한적이거나 연동될 수 있지만, 그 외 사건에 대한 처벌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이므로 행위자 처벌만 가능하고, 사업주 처벌과 연동될 수 없음
-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망사고 원인이 ‘공기 단축을 위한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 크레인 동시 사용’임이 밝혀짐. 공기단축을 위해 평소 사용하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무리하게 적용함. 그러나, 안전조치 관련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안전조치 위반은 무죄가 됨. 안전조치 위반을 전제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무죄가 되었고, 결국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없었음. 이 사고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크레인 기사 노동자와 하청 업체가 처벌받았을 뿐임
- 2인1조 작업 등과 같은 사고사망 다발원인도 사업주 처벌이 불가능함. 구의역 김 군의 경우 사고조사위원회에서 2인1조 작업과 같은 위험의 외주화 등 구조적 원인이 사고원인으로 밝혀짐. 그러나,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사망사고 처벌에 해당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기업에 책임을 묻는 산안법 위반과 연동되는 처벌이 불가능

- 구의역 김 군, 태안화력 김용균, 조선힌청 산재사망 등 정부 및 지자체의 수개월에 걸친 공식적인 사고조사 보고서가 나와도 실제 처벌과는 아무런 연동이 안되는 이유임

## ② 특수고용노동자 사망사고 사업주 처벌 불가능

- 노동부 연구용역에서 산재사망 처벌의 직책 1위는 운전기사임. 현장에서 장비에 따르는 대형 산재사망이 다발하고 있으나 특수고용노동자인 운전기사 처벌로 귀결되고 있음을 보여줌

-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안전조치, 보건조치 또한 직종별로 제한하여 적용되므로 특수고용노동자 사망사고 사업주 처벌 불가능

- 특수고용은 원청 책임이 부과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청 처벌 연동 불가능.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원청 책임 부과되어도, 해당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산재사망 처벌조항과는 연계되어 있지 않음

- 2017년, 2018년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와 관련한 20여건에 달하는 사망사고 발생. 그러나, 법에 원청 책임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사망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은 불가능했음

-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이 되었지만,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원청 책임도 안전조치 실시와 위반에 대한 처벌일 뿐, 사망사고 처벌조항은 연계되어 있지 않음

## ③ 기업이 사업장 및 위험 책임을 분산시켜 놓고, 재벌 대기업의 오너 등 명목상 지위를 갖지 않는 경우 등 처벌에서 빠져 나가는 경우 다발

- 다수의 중대재해 사례에서 기업의 오너들이 각종 책임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명목상 지위를 갖지 않고 있거나, 사업장내 책임자급 혹은 말단관리자에게 <위임>해 놓는 경우 다발. 이런 경우 기업 오너들의 구체적 위법지시 증거가 나와도 처벌과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 법리적 한계가 있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사망에서 피해 당사자를 확장하고,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확장하였음. 산안법의 사고다발 핵심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넘어서서 위험 방지의무를 부과하였음. 위험방지의무 위반에 책임을 물어 기업 최고책임자와 법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

○ 형량과 관련해서는 하한형,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하고 영업정지 등 다양한 규제를 병과하였으며, 기존 법령이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으로 한계가 있었던 점을 법원의 선고를 통하여 행정절차 집행을 의무화하였음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하나의 사건에 동시 적용되어 기존의 산안법이나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하지 못하는 기업의 최고책임자 및 법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보완 법안이자 특별법임. 특별법의 지위로 우선 적용되며, 상상적 경합에 있어서 형량이 높은 중대범죄가 우선 적용 되도록 하는 것임

○ 산재사망뿐 아니라 재난참사에도 적용되는 법안임. 철도, 지하철, 건설공사, 화학물질 등 재난참사는 산재사망보다 관련 규정도 미미하고 책임 있는 공무원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반복 발생함. 이는 시민의 피해이기도 하지만 공공영역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함. 철도, 지하철 등 공공영역 사고에서 책임자 처벌이 아니라 말단 노동자 처벌로 귀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기도 함

#### 4)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 참사 뒤 발표된 산안법 개정과 특례법 개정으로 개선이 불가능한가?

##### ○ 정부 추진 법 개정 동향

- 2020년 산안법 개정으로 산재사망 처벌에서 원청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의무 위반 명시
- 특수고용노동자 직종별 적용 안전조치, 보건조치 위반에 따른 사망사고도 적용받게 됨
-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 대책으로 산안법에 법인 과징금 신설, 안전보건사항에 대한 경영책임자 보고의무 신설, 법무부 다중인명 사상사고에서 형량 합산하는 특례법 개정 추진 발표

##### ○ 정부 추진 법 개정의 한계

- 노동부의 구형기준, 양형기준 개선은 필요한 사항임. 특히, 산재사망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의 무수한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구형기준, 양형기준 개선과 동시 진행되어야 함
- 노동부, 법무부의 개정 추진은 형량이 높아지는 결과가 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책임자 처벌은 불가능한 추진임
- 노동부는 개정 산안법에 도입된 <기업의 대표이사 이사회 보고의무>, 새로이 추진하는 <안전보건 위험요인에 대한 경영책임자 보고>를 법무부 추진 특례법 개정과 연동하여 경영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안임



- 그러나, 현장에서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즉시 문책사항으로, 위험요소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담당자, 안전책임자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 불가능
- 과징금 제도 도입도 재벌 대기업에게는 사업장 개선으로의 연동을 기대할 수 없음
- 또한 산재사망 처벌이 안전조치, 보건조치, 원청 책임 등 법에 명시된 조항위반으로 발생한 사망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근본문제 해결이 불가능함

NO  
MORE  
DEATH

NO  
MORE  
DEATH

# “반복되는 죽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이전의 법률안과 무엇이 다른가?’

‘처벌보다는 예방이 필요한 것 아닌가?’

‘영국의 기업살인법 효과는 과장?’

‘산안법을 강화하면 되는 것 아닌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법안 설명회

일시/장소 : 7월 2일(목) 오후 2시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사회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 피해자와 동료가 말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분]
- ✓ 법안설명 [20분] 운동본부법률팀장 손익찬 변호사
-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0분] 운동본부 최명선 상황실장
- ✓ 질의응답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운동본부 홈페이지 <http://nomoredeath.kctu.org/>  
운동본부 이메일 [nomoredeath2020@gmail.com](mailto:nomoredeath2020@gmail.com)  
문의 02-2670-9136, 02-469-3976